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1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2. 2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2. 3. 4.
- 다. 상정일자: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3.1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최종익】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전면 개정(2022.1.13.)으로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 ~ 제3조)
- 2) 의견 제출 방법 등(안 제4조 ~ 제5조)
- 3) 제출된 의견 검토(안 제6조)
- 4) 의견의 반영(안 제7조)
- 5) 차별대우의 금지 등(안 제8조)

6) 의견 제출인 표창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(2021.1.12. 공포, 2022.1.13. 시행)되어 자치법규인 규칙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·개정(폐지를 포함)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그 의견의 제출 방법·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- 현행 행정절차법을 보면 규칙의 제·개정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견 제출은 가능하나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여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등 주민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는 바, 금번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제¹⁾와 더불어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할 것임.
- 다만,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마포구는 동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구민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견제출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1)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(2022.1.13. 시행),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(2022.2.10. 시행)
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: 없 음

【참고자료】

■ 지방자치법

- 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